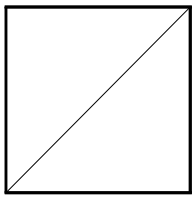
공 개



| 의안번호 | 제 305 호 |
|---|---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6. 7. 1.<br>(제 12 차) |

의결사항

# 아너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| 제 출 자 | 위원장 이 억 원 |
|---|---|
| 제출<br>연월일 | 2026. 7. 1. |

## 1. 의결주문

아너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아너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가.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

□ 아너스자산운용㈜ : 과태료(40백만원) 부과

## 4. 참고사항

**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**

**나. 관계법규** (붙임 1)

**다. 제재내용 공개안** (붙임 2)

**라. 관계부서 협의**

○ 2026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(2026.3.19.) 심의필

○ 2026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(2026.5.20.) 심의필

○ 2026년도 제12차 안건소위원회(2026.6.25.) 심의필

<별지>

아너스자산운용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# 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아너스자산운용㈜ : 과태료 40백만원 부과*

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 :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8호, 제449조 제1항 제29호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5호, 제390조 및 <별표22>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아너스는 투자자인 A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.XX.XX. ㉮펀드를 설정하고, 재산 전액으로 B가 발행한 ㉯전환사채를 매입하여 ㉮펀드의 유일한 운용자산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(붙임 1)

# 관계 법규

## 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**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1. ~ 7. <생략>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**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6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**제424조(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)** ① ~ ② <생략>
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·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~ ⑥ <생략>

**제449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8. <생략>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② ~ ④ <생략>

| [별표 1]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업무 위탁계약 취소·변경 명령의 사유 (제420조, 제422조 관련) |
|---|
| 92.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|

## 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**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① ~ ③ <생략>

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4. <생략>
5.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6. ~ 9. <생략>

**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**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90조 관련)**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
|---|---|---|
| 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|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| 5,000만원 |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**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**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<생략>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**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0조 관련)**

| 위반결과* \ 동기** | 상 | 중 | 하 |
|---|---|---|---|
| 중대 | 법정최고금액의 100% | 법정최고금액의 80% | 법정최고금액의 60% |
| 보통 | 법정최고금액의 80% | 법정최고금액의 60% | 법정최고금액의 40% |
| 경미 | 법정최고금액의 60% | 법정최고금액의 40% | 법정최고금액의 20% |

* 중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

보통 : '중대', '경미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경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

**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
하 : '상' 또는 '중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금융위원회 | 금융감독원 |
|---|---|---|
| 소관부서 | 자산운용과 | 금융투자검사3국 |
| 연 락 처 | 02-2100-2673 | 02-3145-7839 |